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74호 2024. 10. 15.(화)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1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4-2021 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2015년 인상된 후 현재까지(10년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그동안 임금인상,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구 분		현행	개정안	인상액	비고
분뇨	10리터당	401원	720원	319원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하수	기본 750리터까지	21,053원	22,600원	1,547원	
처리시설	추가 100리터당	1,628원	2,080원	452원	
지하층 할증료		없음	8%		

나. 지하층 할증료 신설(안 제4조3항)

- 지하 2층을 포함한 그 아래의 층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대행자의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시설에만 별표에 따른 지하층 할증료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구청장(참조 : 생태하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생태하천과 오수관리팀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팩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하 2층을 포함한 그 아래의 층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대행자의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시설에만 별표에 따른 지하층 할증료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신청한 자는 제4조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용 량	요 금	비 고
분 뇨		10리터당	720원	수수료에는 1리터당 1원씩의 처리 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하수 처리시설	기 본	750리터까지	22,600원	
	추 가	100리터당	2,080원	
	지하층 할증료		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p> <p>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u>별표 1</u>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p> <p>2. (생략)</p> <p>② (생략)</p> <p><u><신 설></u></p>	<p>제4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 -----.</p> <p>1. ----- ----- ----- <u>별표</u>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지하 2층을 포함한 그 아래의 층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대행자의 가압펌프를 사용하는 시설에만 별표에 따른 지하층 할증료를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u></p>

관계법령 발취

○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 ③ 생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3. 7. 16., 2020. 5. 26.>

⑤ 생략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20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본 조례와 관련된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 연가가산을 위한 경력인정 기간 확대

-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신설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일수 확대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 본인 및 배우자(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93, 팩스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

나. 연가가산을 위한 경력인정 기간 확대(안 제18조의2 및 안 별표 4)

다. 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신설(안 제18조의3)

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휴가일수 확대 (안 별표 3)

마.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 3)

- 본인 및 배우자(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전체”를 “주민 전체”로, “성실로서”를 “성실로써”로 한다.

제3조의2제4호 중 “정부나”를 “정부, 지방자치단체,”로, “행정목적달성”을 “행정 목적 달성”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행동율”을 “행동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분별하고”를 “분별하고,”로, “존중하며”를 “존중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임자로”를 “수임자로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제2항 본문 중 “제18조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외”를 “공무 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제18조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 후단 중 “제1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

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공무 외의 국외여행)”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표 4로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입 양	본인	2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사 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자(즉, 호봉 또는 연봉제근무연수 확정 시 공무원 근무경력 외 인정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지방공무원법</u>」 및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p>
<p>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u>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u></p>	<p>제2조(복무선서) ① ----- ----- 「<u>지방공무원법</u>」----- ----- -----.</p>
<p>② · ③ (생략)</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u>주민전체</u>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u>성실로서</u>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책임완수) ----- <u>주민 전체</u>----- ----- ----- <u>성실로써</u> ----- -----.</p>
<p>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조의2(비밀엄수) ----- ----- ----- ----- ----- -----.</p>
<p>1. ~ 3. (생략)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p>	<p>1. ~ 3. (현행과 같음) 4. -----</p>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정부, 지방자치단체,
----- 행정목적 달성-----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생략)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 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행동 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
----- 분별하고, -----
----- 존중하며, -----

-----.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수임자로서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근검·절약) (생략)

제6조(근검·절약)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삭제>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
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
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
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
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전일을 기
준으로 계산한다.

④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삭 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 2.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 설>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 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

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별표 3에 의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 공무 외 -----

-----.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공제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삭 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삭 제>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
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
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여할 때

9.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
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섭
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하는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생 략)

② 임신 중의 공무원에게 그 출산
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엔 12
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하
고, 휴직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경우에는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
 산한 경우에는 59일)범위에서 출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
 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
 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
 에 따른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한다)·사산의 경험
 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
 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삭 제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
 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
 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

<삭 제>

을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삭 제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1. ~ 4. (생략)

⑩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

<삭 제>

⑨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1. ~ 4. (현행과 같음)

⑩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삭 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8조제2항을 따른다.

⑬ (생략)

<신설>

⑭ (생략)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

⑫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

⑬ (현행과 같음)

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⑮ (현행 제14항과 같음)

<삭제>

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생략)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인천광역시 서구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 1. 지방의회의원
-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삭 제>

- 1. 정당의 조직, 조직 및 그 밖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
-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

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 3.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이하 “공무상 부상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 1. 병가(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0. 7. 15.]

제7조의7(특별휴가) ① ~ ⑥ 생략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⑨ ~ ⑭ 생략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